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한과 위임사항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3.1.3. 개정·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기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2.10.18. 개정, '23.4.19. 시행 예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법 제28조제1항제9호(중소기업팩토링) 및 제10호(종전 9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규정 정비(안 제30조제1항)

다. 중소기업팩토링 심사 시 신용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1. 19. ~ 02. 28.)

대통령령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제9호”를 각각 “제10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및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u>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u> <u>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u> <u>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용자금에</u> <u>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u> <u>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u> <u>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 호·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 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 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 사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제 1항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 ----- ----- 1.----- -----제10호----- 2.----- -----제10 호----- 3.----- ----- -----제10호-----
② (생략)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u>및 제9호</u>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11. (생략) ② (생략)	----- ----- ----- ----- ----- ----- ----- ----- -----. 1.----- ----- -----, <u>제9호 및 제10호</u>----- ----- 2.~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xxxx